

## 거기마을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위·수탁 협약서

### □ 공동이용시설물 목록

시설명(용도)	면적(m <sup>2</sup> )	구조	소유자	비고
거기문화복지사랑방	176.72m <sup>2</sup>	일반목구조	함양군	

위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와 함양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효율적 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위탁자 함양군수를 “갑”이라 하고, 수탁자 거기마을 운영위원회를 “을”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위·수탁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거기마을 주민들을 위해 건립한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함에 있어 “갑”과 “을”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위·수탁기간)** ① 본 협약의 위·수탁기간은 2020년 7월 15일~ 2025년 7월 14일 까지(5년간)으로 한다.

② “갑”과 “을”이 위·수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에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3조(관리 및 운영방법)** ① “을”은 시설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관련법을 준수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.

② “을”은 “갑”的 정당한 행정지시에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체적 운영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.

③ “을”은 공유시설물(물품포함)의 훼손(분실)시 규격과 성능이 그 이상의 사양으로 보강·보충하는 등 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자를 배치하여 책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“을”은 운영위원회 조직의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시 “갑”에게 보고하도록 한다.

**제4조(사용료)** 시설의 사용료는 “을” 인 거기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.

**제5조(비용부담)** 관리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, 보험료, 상하수도사용료, 전기료, 폐기물 수거 수수료 등 제반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는 “을” 이 부담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 “갑” 이 판단하여 인정할 경우에는 “갑” 이 부담하도록 한다.

1. 천재지변 등 “을” 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난에 대한 복구비
2. 법령의 개정이나 “갑” 의 필요에 의한 시설, 장비의 추가 등에 소요 되는 비용
3. 재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구연한을 증가 시키는 시설공사 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 등

**제6조(보험가입)** “을” 은 협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협약기간 동안에 대하여 “갑” 소유의 시설물 및 장비(화재로 인하여 소실될 우려가 있는 물건 포함)에 대하여 “갑” 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사업자의 손해보험 및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, 그 보험증서를 협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수탁자 행위 제한)** “을” 은 “갑” 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.

1. 사용목적의 변경
2. 위탁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
3.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
4. 위탁재산에 시설한 “을” 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

**제8조(해지)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“갑” 은 “을” 과 협의하여 위·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2조에 의한 위수탁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
2. “갑” 이 공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로 할 때
3. “을” 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
4. “을”이 협약조건을 위반할 때 (“을”이 본 협약 조항을 위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“을”에게 손해가 있을 지라도 “갑”은 이를 배상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)
5. 시설물의 문제점 및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“을”의 해지 요구가 있을 경우

**제9조(해약시 처리)**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약된 “을”은 “갑”이 지정하는 기한내에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“갑”의 입회하에 반환 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민형사상 책임)** ① “을”은 “갑”이 위탁한 시설의 관리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인적,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.  
② “을”은 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“을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“갑”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적용법률)** “갑”과 “을”은 본 협약 조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함양군 ~~공유재산관리조례~~ 등에 준하여 처리한다.

**제12조(해석)**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 “갑”의 의견에 따른다.

**제13조(효력발생 시기)**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며 “갑”은 시설일체를 “을”에게 인계한다.

본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2통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가진다.

2020년 7월 15일

위탁자 - 함 양 군 수

서 춘 수 (인)

수탁자 - 거기마을 운영위원회

위원장 정태용 (인)

